

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나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채무금의 범위확정에 관한 이견이 생기자, 피고가 같은 해 11. 9.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0년 11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범위확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또는 이견이 있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(위 협약서 제4조 제2항).

바. 위 소송의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01 나56258호)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02. 5. 28. 선고되었고, 위 판결은 상고 없이 같은 해 6. 26. 확정되었는바, 위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이 사건 보증채무에는 민법 제429조에 따라 주 채무에 종속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고, 포함되는 기간은 보증채무의 확정시까지이다.
- (2)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시에 보증채무액이 확정되고 지체없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청구한 일시에 구애되지 않고 청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,

피고는 주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후 5일부터 11일 사이에 보증금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증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보증금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니, 결국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각 확정보증금액은 각 연체할부원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약정일 다음날부터 각 보증금청구 일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인 별지 제2목록의 확정보증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, 이는 모두 보증가입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자체가 원고가 지급할 확정보증금액이 된다.

- (3) 보증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6%에 따라야 할 것이다.
- (4)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위 확정된 보증채무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1999. 6. 24.까지 연 6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위 일시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.